

하도급분쟁의 조정

김 인 준

공정거래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법률심의원(공정위 부이사관)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세계에서 같은 예가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는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산업체에 대한 조세·금융의 지원과 무역정책에서의 보호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우리 사업자들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도 크지만, 동시에 자기 개별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업자들끼리의 담합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짓거나 상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경쟁으로 경제발전을 지향할 새로운 경쟁질서로서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1981년 4월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세칭 공정거래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금년 2002년까지 2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공정거래질서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1985년 4월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세칭 하도급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동 하도급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공정거래협회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1999년부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년 2002년까지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산·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한국공정거래협회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1999년 7월에 설치하여 그 해에는 46건 신고되어 처리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47건 및 201건 신고되어 대상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신고 주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을 의뢰

하거나 신고인이 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거의 절반씩이다. 대상업종은 건설이 제조보다 조금 많은 편이나, 2000년에는 제조가 더 많았다. 처리내역을 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처리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조정 완료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이 분쟁에 대한 서로의 합의해결 인식이 아예 없거나 협조정신이 부족하여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협의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건은 그 경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여 심사하게 되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건은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하도급분쟁의 조정이라는 것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이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이 공정한 계약을 실시하고 그 계약대로 건설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회는 세칭 경제적 강자라고들 하는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누구든지 불문하고 기본상식에 어긋나게 하도급법 규정을 어기는 자는 보호되지 않고 동 규정을 준수하여 법질서를 지키는 자만이 보호된다는 진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사업자 여러분들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검찰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하도급거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협회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여 분쟁을 조정 받으면 수수료 없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관련 내용도 알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정거래협회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사업자 여러분의 사업수행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